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약관

제정일 2026. 07. 13.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증권(이하 "회사"라 한다)이 제공하는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규, 회사의 매매거래계좌 설정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내주식"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을 말한다.
2. "소수점 거래"라 함은 1주 미만의 소수 단위로 국내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수점 주문"이라 함은 고객이 금액 또는 수량 단위로 신청하는 소수점 거래 주문을 말한다.
4. "온주"라 함은 1주 이상의 정수 단위 수량을 말한다.
5. "신탁수익증권"이라 함은 회사가 체결·취득한 온주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신탁제도를 통하여 신탁하고, 이를 기초로 발행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6. "소수점 잔고"라 함은 소수점 거래를 통하여 고객이 취득한 주식 중 소수점으로 표시되는 잔고를 말한다.
7. "일반잔고"라 함은 온주 단위로 보유하는 주식 잔고를 말한다.
8. "온주전환"이라 함은 결제 완료된 소수점 잔고 중 1주 이상의 정수 단위 수량을 일반잔고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9. "거래 가능 종목"이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선정한 국내주식을 말한다.

제3조(서비스 약정, 해지 등)

- ① 서비스 약정은 고객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여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 성립한다.
- ② 서비스는 회사가 정한 계좌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계좌 유형 등 세부 기준은 <별첨 1>에 따른다.
- ③ 서비스 해지는 해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1. 소수점 잔고가 없을 것

2. 소수점 거래 관련 미결제 내역이 없을 것
 3. 소수점 주문 신청 내역이 없을 것
 4. 소수점 거래 관련 권리배정 예정 내역이 없을 것
- ④ 회사는 관계법규, 감독당국의 요구 또는 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서비스의 신청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거래 가능 종목)

- ① 서비스는 거래 가능 종목에 한하여 제공되며, 거래 가능 종목은 회사의 기준, 시장 상황 및 관계기관 기준에 따라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다.
- ② 거래 가능 종목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은 <별첨 1>에 따른다.
- ③ 거래 가능 종목에서 제외된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 잔고의 매도만 가능하다.

제5조(서비스의 내용)

- ① 고객의 소수점 주문은 회사가 종목별로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각 취합하여 부족분을 회사 보유분으로 보완하여 온주 단위로 구성하고, 회사 명의로 거래소에 주문을 제출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체결된 주식을 예탁결제원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신탁수익증권으로 분할한 후 고객에게 배분한다.
- ③ 서비스는 실시간 거래가 아니며, 고객은 소수점 주문에 대하여 가격을 지정할 수 없다.
- ④ 소수점 주문 신청 시점의 예상 체결 가격 및 주문 수량과 실제 체결 가격 및 체결 수량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⑥ 소수점 주문 신청 접수, 취합, 실행 및 배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첨 1> 및 <별첨 2>에 따른다.

제6조(주문)

- ① 소수점 주문은 매수 및 매도 주문 모두 금액 또는 수량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문 채널에 따라 주문 가능한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 ② 최소 주문금액, 최소 주문수량, 최대 주문한도, 주문 가능 시간 및 주문 가능 채널은 <별첨 1>에 따른다.
- ③ 소수점 주문은 접수 상태에서만 전부 취소할 수 있으며, 주문의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회사는 각 회차별로 접수된 주문에 한하여 주문을 실행하며, 미체결되거나 배분 실패된 주문은 해당 회차 종료 시 효력을 상실한다.
-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문의 접수 또는 실행을 제한하거나 이미 접수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1. 주문 가능 금액 또는 주문 가능 수량이 부족한 경우
 2. 사고등록계좌 등 계좌 거래가 제한된 경우
 3. 거래정지, 관리종목 지정, 정리매매, 권리 발생 등으로 해당 종목의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
 4. 시장 급변, 주문폭주, 전산장애, 거래소 또는 예탁결제원 시스템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주문 집행이 곤란한 경우
 5. 거래 가능 종목이 거래 불가 종목으로 변경된 경우

6. 투자자 별도 지시를 넥스트레이드(NXT)로 설정한 경우
 7. 기타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⑥ 제5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유한 종목이 거래 불가 종목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한 매도 주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⑦ 소수점 거래의 매수 증거금은 현금 100%로 적용한다.

제7조(체결 및 배분)

- ① 회사는 고객의 소수점 주문을 취합하여 온주 단위로 주문을 집행하며, 종목별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은 서로 상계하지 아니한다.
- ② 소수점 주문을 통해 체결된 수량은 고객의 주문금액(수수료 포함) 또는 주문수량을 기준으로 안분 배분하며, 배분 시 신탁수익증권으로 고객 계좌에 반영한다.
- ③ 소수점 주문의 체결 가격은 해당 회차에서 실제 체결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고객별 체결 금액의 원 미만 단위는 버림 처리한다.
- ④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 수량, 절사 수량 및 미배분 수량은 <별첨 2>에서에 따라 처리한다.
- ⑤ 실제 배분 수량이 회사가 정한 최소 거래 단위에 미달하거나, 시장 상황 또는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배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체결 실패로 처리될 수 있다.
- ⑥ 소수점 주문 체결 및 배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첨 2>에 따른다.

제8조(잔고 관리 및 온주전환)

- ① 소수점 잔고와 일반잔고는 구분하여 관리한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앱에서 동일 종목의 일반잔고와 소수점 잔고를 합산한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 ② 소수점 잔고는 신탁수익증권의 좌수로 관리하며(1주 = 1,000,000좌), 회사는 이를 주식 수량으로 환산하여 표시할 수 있다. 잔고증명서 등 대외 증빙서류에는 신탁수익증권 명칭 및 좌수로 표시한다.
- ③ 소수점 거래의 결제일은 국내 주식시장 결제기준(T+2)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④ 결제 완료된 소수점 잔고 중 1주(신탁수익증권 1,000,000좌) 이상의 정수 단위 수량은 회사가 정한 시점에 자동으로 온주전환한다.
- ⑤ 온주전환된 수량은 일반잔고로 전환되며, 이후 일반 주식과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 출고 및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 ⑥ 소수점 잔고는 온주전환 전까지 자사 내 다른 계좌 대체, 타사 입출고, 담보 제공 및 대용증권 인정이 불가하다. 다만, 상속 등 관계법규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⑦ 기타 온주전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첨 2>에 따른다.

제9조(권리 처리)

- ① 소수점 잔고에 대한 현금배당,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 경제적 권리 발생 시 고객의 보유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② 소수점 잔고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임의매도 후 현금

지급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유상증자(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2. 회사 합병·분할, 감자, 액면분할·병합, 주식교환·이전 등 주식 교체가 수반되는 경우
 3.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 ③ 소수점 잔고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
1. 의결권
 2. 유상증자(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
 3. 반대의사표시, 매수청구권, 공개매수 등 고객의 별도 의사표시가 필요한 권리
- ④ 회사는 권리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종목의 신규 매수·매도 주문 접수 또는 온주전환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 유형별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별첨 3>에 따른다.

제10조(수수료 및 비용)

- ①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및 기타 제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 ② 수수료율 및 부과 기준은 <별첨 3>에 따르며, 회사는 이를 홈페이지 또는 앱에 게시한다.
- ③ 회사는 관계법규 또는 회사 정책의 변경에 따라 수수료 및 비용 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고지한다.

제11조(서비스의 제한 및 중단)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관계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감독당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의 시스템 장애 또는 업무 중단이 발생한 경우
 3. 회사 시스템 점검, 장애 또는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4. 거래 가능 종목의 거래정지, 정리매매, 권리 처리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5. 천재지변, 전시, 사변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실을 홈페이지, 앱 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안내한다.

제12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2. 거래소, 예탁결제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의 시스템 장애, 업무 지연 또는 중단
3. 시장가격 급변동, 매매제한조치 등 시장 상황으로 인한 주문 미체결 또는 일부 체결
4.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고객이 입력한 정보의 오류
5. 관계법규 또는 유관기관 기준에 따른 거래 제한, 권리 제한, 온주전환 제한 또는 서비스 중단

6. 회사가 이 약관 및 <별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한 주문 취소, 체결 실패, 배분, 절사, 온주전환, 임의매도 또는 권리 현금화 처리

제13조(약관의 변경)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내용을 시행일 20일 전까지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홈페이지, 앱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한다. 다만, 관계법규 또는 유관기관 업무규정의 제정·개정 등에 따른 제도 변경 등으로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일 전까지 게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 통지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를 함께 통지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기간 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4조(관계 법규의 준용)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거래소 및 예탁결제원 관련 규정, 회사의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및 기타 관련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관련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15조(분쟁조정)

고객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서비스 신청 및 주문 기준

1. 서비스 이용 대상 계좌

본 서비스는 종합계좌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그 외 주식계좌 등의 계좌에서는 이용이 불가하다.

2. 거래 가능 종목

가. 거래 가능 종목은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 종목 중 회사가 선정한 종목으로 한다.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목은 거래 가능 종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ETF, ETN, 리츠, DR, SPAC
- 2) 시장조치종목(투자경고, 투자위험, 관리종목, 정리매매 등)
- 3) 단가 1,000원 미만 종목
- 4) 교체권리 예정 종목(감자, 회사 합병·분할, 액면분할·병합, 주식교환·이전)
- 5) 기타 회사가 거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종목

다. 거래 가능 종목에서 제외된 종목은 보유 잔고의 매도만 가능하다.

3. 주문 가능 시간 및 회차

본 서비스는 영업일 기준 1일 2회 주문을 취합하여 실행한다.

구분	주문 신청 시간	취합	실행
1회차	08:20 ~ 09:20	09:20	09:30
2회차	09:20 ~ 14:20	14:20	14:30

※ 수능일, 연초 개장일 등 거래시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거래소 운영시간에 따른다.

※ 예약 주문은 14:20 ~ 익영업일 07:30 에 신청 가능하며, 익영업일 08:20 에 발주한다.

4. 주문 단위 및 한도

구분	최소 주문금액	최소 주문수량
일반/간편주문, 주식 모으기	1,000원	0.0001주
리워드	10원	0.0001주

※ 최소 주문수량은 종목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대 주문한도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5. 주문 방식

가. 소수점 매수 주문은 금액 또는 수량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나. 소수점 매도 주문은 수량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다. 보유 잔고의 최소 거래 단위(0.0001주) 미만 수량은 매도할 수 없으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인수·현금화할 수 있다.

라. 소수점 주문은 정정할 수 없고, 접수 상태에서만 전부 취소할 수 있다.

마. 매수 증거금은 주문금액과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바. 소수점 주문은 회사가 정한 최적가로 자동 지정되며, 고객은 가격을 지정할 수 없다.

<별첨 2> 소수점 주문 체결·배분, 소수점 잔고 표시 및 온주전환 기준

1. 체결 및 배분 원칙

- 가. 회사는 종목별로 매수주문 및 매도주문을 각 취합하여 온주 단위로 집행하고, 체결 결과에 따라 고객별 수량을 안분 배분한다. 종목별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은 서로 상계하지 아니한다.
- 나. 체결 가격은 해당 회차에서 실제 체결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고객별 체결 금액은 원 미만 버림 처리한다.
- 다. 배분 시 신탁수익증권으로 고객 계좌에 반영한다.

2. 체결 수량 산정

- 가. 매수 금액주문: $\text{체결 수량} = (\text{주문증거금} - \text{수수료}) \div \text{체결단가}$
(단, 체결 수량은 접수된 주문수량을 초과할 수 없음)
- 나. 매수 수량주문: 체결(배분) 수량은 주문수량 범위 내에서 결정됨
- 다. 매도 수량주문: 체결(배분) 수량은 주문수량 범위 내에서 결정됨

3. 배분 수량 처리

- 가. 배분 수량은 고객별 주문금액(수수료 포함)을 온주 체결단가로 나누어 산정하며,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정하고 그 미만은 버림 처리한다.
- 나. 1차 배분 후 잔여 수량이 있고 2차 배분이 가능한 주문의 경우, 최소 배분수량(0.0001주)을 배분 받지 못한 주문을 우선 배분하고, 배분 비율이 높은 순으로 0.0001주(100좌)씩 재배분한다. 배분 비율이 동일한 경우 주문 접수 시간이 빠른 순으로 한다.
- 다. 회사의 온주 주문이 일부만 체결된 경우, 체결비율($\text{체결수량} \div \text{주문수량}$)을 기준으로 1차 배분 후 '나' 항에 따라 재배분한다.
- 라. 회사는 수기 배분을 하지 아니하며, 모든 배분은 회사 전산 처리 기준에 따른다.

4. 체결 실패 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문은 체결 실패로 처리한다.

- 가. 배분 수량이 최소 거래 단위(0.0001주)에 미달하는 경우
- 나. 시장 상황(VI 발동 등), 전산장애, 주문장애 등으로 주문 실행 또는 배분이 불가능한 경우
- 다. 주문 실행 시점에 증거금 또는 주문 가능 수량이 부족한 경우

5. 소수점 잔고 표시

- 가. 소수점 잔고는 신탁수익증권 좌수로 관리하며, 1주는 1,000,000좌로 본다.
- 나. 회사는 앱에서 소수점 잔고를 주식 수량(소수점 넷째 자리)으로 환산하여 표시할 수 있다.
- 다. 잔고증명서 등 대외 증빙서류에는 소수점 명칭 및 좌수로 표시한다.

6. 온주전환

- 가. 결제 완료된 소수점 잔고 중 1,000,000좌(1주) 이상의 정수 단위 수량은 자동 온주전환한다.
- 나. 온주전환은 결제 완료된 신탁수익증권에 한하며, 결제일 14시 이전에 전환 처리가 가능한 경우 당일 결제 작업 후 즉시 전환하고, 14시 이후인 경우 익영업일 결제 작업 후 전환한다.
- 다. 온주전환 수량의 취득일자는 온주전환일로 하며, 온주전환 단가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온주전환단가} = \sum(\text{매수체결단가} \times \text{매수수량}) \div \text{보유수량}$

- 라. 회사는 액면분할·병합, 감자, 회사 합병·분할, 주식교환·이전, 상장폐지, 거래정지, 관계기관 제한조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온주전환을 제한하거나 지연할 수 있다.

<별첨 3> 권리 처리 및 수수료 기준

1. 권리 유형별 처리

구분	권리 유형	처리 방법
권리 배분	현금배당, 주식배당, 무상증자	보유 비율에 따라 배분
임의매도 후 현금 지급	유상증자(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감자, 회사 합병·분할, 액면분할·병합, 주식교환·이전, 상장 폐지	전량 임의매도 후 현금 지급
미제공	의결권, 유상증자(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 반대의사표시, 매수청구권, 공개매수	권리 행사 불가

2. 임의매도 시점

- 가. 유상증자(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상장 후 첫 거래일
- 나. 교체권리 종목(감자, 회사 합병·분할, 액면분할·병합 등): 권리기준일 2영업일 전
- 다. 상장폐지 종목: 정리매매기간 첫 거래일

3. 권리 배분 잔여분 처리

- 가. 권리 배분 결과 최소 거래 단위(0.0001주) 미만의 수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인수하고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나. 잔여분 배정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절사 금액이 큰 고객 → 2) 보유 수량이 많은 고객 → 3) 전산적으로 무작위 배정

4. 수수료 및 제세금

구분	기준
매수 수수료	거래금액의 0.015%(최소 1원, 원 미만 버림)
매도 수수료	거래금액의 0.015%(최소 1원, 원 미만 버림)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코스피 : 농어촌특별세 0.15% 증권거래세 0.05% 코스닥 : 증권거래세 0.20%

※ 자세한 수수료 및 제세금 부과 기준은 홈페이지(www.kakaopaysec.com) 및 앱에 게시한다.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카카오페이증권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